

● **환경부령 제952호**

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11월 09일

환경부장관 

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

제3조의2제1항 중 “기상청장”을 “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3 제1호라목4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3 제1호라목4)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**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증명서 서식 중 성명, 전화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임.

<환경부 제공>